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. 4. 24 선고 2018가단50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

피고A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4. 24.

주 문

1.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. 4. 2. 접수 제75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판결)

판사정희철

별지